

[학생생활관 기숙사 명재관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명재관) 입사학생(사생)의 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명재관에서의 건전한 학생생활관 문화정착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2장 출입시간

제3조 명재관의 출입 가능한 시간은 05: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01:00 전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제3장 특별점검과 생활점검

제4조 점검의 목적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통하여 보다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제5조 특별점검은 매 학기 3회 부정기적으로 사생회에서 구성한 사생단이 실시한다.

제6조 당일 23:00에 특별점검이 있음을 공지하고, 23:30에 각자의 방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생활점검은 미리 공지하며 22:30에 실시한다.

제7조 점검에 불참하거나 점검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벌점이 적용된다. 단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외박

제8조 숙박포털 및 행정실 앞에 위치한 외박계를 작성하면 외박이 가능하다. 외박계에는 반드시 외출 일부터 귀사 일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록보다 일찍 귀사한 경우, 행정실에 구두보고 해야 한다.

제9조 외박일수는 매달 15박으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박일수가 한 달에 15박을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단, 학교행사 혹은 본인입원이나 직계가족의 상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외박일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제5장 사생회

제10조 사생회는 총 7명으로, 사생장 1명과 부사생장 6명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사생회의 선발은 매년 1회 기숙사 사생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제12조 사생회는 사생들의 대표이자 총장으로서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돕는다. 또한 특별점검 및 생활점검, 퇴사업무 보조 등 각종 행사를 돕는다.

제13조 사생회는 사생단 회칙에 따른다.

제6장 예절

제14조 사생은 관장 및 조교를 포함한 기숙사 내의 직원, 사생 간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제15조 기숙사 건물 내는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한다.

제16조 입사 시 배정된 방을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다. 단 룸메이트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방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건 및 위생

제17조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염성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실에 보고하고, 조치를 따른다.

제18조 시설관리, 위생 등의 문제로 판단이 되는 경우, 행정실 직원은 사생에게 미리 공지하고 협의하에 사생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제19조 생활점검 시 방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정된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제20조 배달음식은 새벽 01:00 이후 반입이 금지되며, 그릇은 잔반통에 잔반 처리 후 지정된 장소에 둔다.

제8장 생활 및 관리

제21조 관장의 승인 없이 사생이 외부인을 기숙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나 사생실에 입실시켜서는 안된다.

제22조 전기제품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일체 사용을 금지한다(가스버너, 촛불 등도 포함). 단, 사용 가능한 전기용품은 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전기 충전기류, 전기형 모기 살충제, 컴퓨터 및 컴퓨터 부속용품으로 제한한다. 기타 불확실한 경우 전기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는 행정실에 직접 문의한다.

제23조 기숙사 내 시설 또는 기물 훼손 시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시설 또는 기물훼손 사실을 숨기고 퇴사한 경우에는 시설보증금에서 손비 처리 후 환불된다.

제24조 기숙사 내의 세탁실(다림질 실), 체력단련실, 스터디 룸은 사생만 이용 가능하다. 단, 체력단련실의 경우 07:00부 터 23: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제25조 다리미, 자외선 소독기의 대여는 경비실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휴게실에 비치된 공용 청소기 및 빗자루, 쓰레받기 세트는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둔다.

제26조 기숙사 용품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제27조 기숙사의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8조 타 사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 기숙사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9장 광고 및 유인물 배포

제29조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직인날인 필)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택배 확인 및 수령

제30조 모든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물은 행정실에서 수령하며, 택배물 일 경우 택배보관함에서 무인수령(본인이 택배함에서 택배 장부에 서명하고 수취할 수 있다.)

제11장 포상

제31조 명재관은 기숙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생에 대하여 포상 또는 상점을 줄 수 있다. 상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기숙사 거주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매년 2명으로 제한)

제32조 포상 혹은 상점은 직원 및 조교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상점에 의한 벌점 경감 여부는 직원 및 조교의 건의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

<상점표>

구분	내용	예시	상점
안전 및 시설보호	사생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	- 화재 진압 및 신고한 경우 -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등 - 공공기물(세탁기, 운동기구 등) 고장 신고 및 청결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여 한 경우	5-10
타의 모범	공동생활기여 및 사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3-10
문화발전	명재관 문화 및 기타 발전에 기여	- 문화체험활동 리더로 적극 참여하여 명재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생 - 명재관 내 행사 개최 시 이바지한 경우	5-10

제12장 퇴사 및 환불

제34조 퇴사는 일반 퇴사와 중도 퇴사로 구분한다.

1. 기숙사 이용일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 일반 퇴사의 경우, 개인의 물품을 모두 소지하고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은 비품(침대패드, 사생증, 카드키)을 정확히 반납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지급받은 비품(침대패드, 사생증, 카드키)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변상한다.
3. 개인 사정에 따라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하며 환불 규정은 아래에 따른다.

① 학기 중 퇴사

사유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입사일 ~ 4주 경과 전	기숙사비의 70%	단, 기숙사 입사일로부터 1일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입사일 ~ 8주 경과 전	기숙사비의 30%	
입사일 ~ 12주 경과 전	기숙사비의 15%	
입사일 12주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다.	

② 방학 중 퇴사

사유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입사일의 1/2 경과 전	기숙사비의 50% 해당액	단, 기숙사 입사일로부터 1일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입사일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숙사 규칙을 위반하여 즉시퇴사(강제퇴사) 되는 경우에도 ‘학기 중 퇴사’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또한 해당 사생에게 퇴사를 고지하고 1주일의 퇴사 준비시간을 주며, 재입사는 불가하다.

제13장 벌칙

제35조 각 조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생에게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첨과 같다.

1. 누적된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는 경고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벌점내역을 고지한다.
2. 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경고 및 퇴사 조치되며, 즉시퇴사의 경우 관장의 승인 후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조항	벌점 기준 표	벌 점
1	벌점 20점 이상	퇴사 -7일 이내 퇴사 -다음학기입사제한
2	학적변동(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숙사 내부에서 애완동물이 발견된 경우	
4	흡연 및 음주, 절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5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숙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6	관장 및 조교를 포함하여 기숙사내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 혹은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경우	
7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로 입사시키거나, 기숙사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단, 입사 및 퇴사 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족 및 친구는 여성에 한해 입실 가능	
8	카드키 위조 또는 빌려주거나 도용한 경우	
9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활관 내 주류보관(빈병포함)할 경우	10점
10	기숙사에 관한 욕설 및 비방 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소셜 네트워크 및 인터넷 공간, 개인 공간 포함)	
11	기숙사내에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할 경우	7점
12	기숙사내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할 경우 ex) 변기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휴게실 정수기에 라면국물 등을 버리는 행위 등	
13	배정된 방을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교체한 경우	
14	외박제 신고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하여 특별점검에 불참한 경우	
15	지각으로 특별점검에 불참한 경우	5점
16	기숙사내 시설 및 기물과 벽에 허가되지 않은 설치 및 부착행위를 한 경우	
17	생활점검 시 방의 청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18	과도한 소음 및 소란, 음주로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밤 12시~오전 5시	
19	기숙사 용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3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외박일수가 한 달에 15박을 초과한 경우	2점 (1박 초과당)
21	출입통제시간(01:00~05:00) 동안의 기숙사 출입(지각)	2점
22	비상 카드를 30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1일 1점
24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지각 제외)	1점
25	기숙사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	공지된 벌점

-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퇴사 조치됨
- ※ 벌점은 학기별로 6개월마다 초기화됨(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
- ※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생 생활수칙의 상·벌점은 기숙사 규정에 근거하여 유추 적용한다.
- ※ 호실출입카드 및 임시출입카드 분실 시 변상 비용 10,000원
- ※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광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제14장 고시반

제36조 고시반 입사는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으로 구분한다.

제37조 고시반 퇴사 시 당해학기에 재입사가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입사 가능하다.

제38조 고시반 거주 연한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